##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18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강경숙・김선민・조 국

차규근 • 박은정 • 황운하

고민정 • 신장식 • 한창민

김문수 · 김준형 · 임오경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을 개설하는 등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광고하고 있음.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생을 선발할 때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발달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행교육을 부추겨 공정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학원 등에 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

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개인과외교습자"를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원등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서 정한 각 학교급 별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이를 위하여 학습자의 선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학원등의 선행교육 관련 교습과정 또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관련기관"을 "교육관련기관 및 학원등"으로 한다.
  -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등이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교육관련기관"을 각각 "교육관련기관 및 학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학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원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		
발행위 금지 등) ① ~ ③ (생	발행위 금지 등)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4		
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u>개인과</u>	개인		
<u>외교습자</u> 는 선행학습을 유발하	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이라		
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u>한다)</u>		
아니 된다.			
<u> &lt;신 설&gt;</u>	⑤ 학원등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 · 도교육과정에서 정한 각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을 앞서		
	는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이		
	를 위하여 학습자의 선발 과정		
	에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등학교 6학		
	년 및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	제12조(시 • 도교육과정정상화심		
의위원회) ① (생 략)	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	2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 의결 한다.

1. ~ 4. (생략) <신 설>

5. (생략)

③ ~ ⑥ (생 략)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의 지도·감독 등) ① (생 략)

<신 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 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 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 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

- 1. ~ 4. (현행과 같음)
- 5. 학원등의 선행교육 관련 교 습과정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 위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의 지도·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학원등이 제8 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 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 다.
  - 3 ---교육관련기관 및 학원등----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관련기관 및 학원등-----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 설>

<신 설>

	-교육관련기관	및	학
원등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 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학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 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원등에 대하여 1년 이 하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 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8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한다.